02. 급여소득자의 소득평가

사고당시 기준

과거 3개월 동안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3개월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1개월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공백기간을 공제한 실제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소득액을 산정한다

상여금 등의 비정규적인 급여는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액

사고당시 소득보다 장해나 사망당시 소득이 더 높다면 장해나 사망당시 과거 3개월 혹은 과거 1년(상여금 등) 기준

3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엔 실제 입사일로부터 사고당시까지로 산정하되 특별히 사규 등에 초임 등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엔 그 금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취업통지서는 받았으나 실제 근무하기 이전의 사고는 해당 직장의 초임

연봉계약근로자의 경우

사고당시 기준의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의 소득은 연령 및 근속 경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소득 및 직종별 업종별 통계소득 등을 기준하여 정한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의 소득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만 적용된다. 정년이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인정도 이와 유사하다.

입증자료

소득 입증자료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 및 상여금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혹은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퇴직증명서(사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 등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급여소득 외에는 기술직임금과 일용근로자임금만 적용하지만, 소송에서는 사회일반에 타당한 소득을 염두에 두고 통계소득 등 다양한 인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다.